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3781호(2024.06.28) 유효기간(2025.06.27)

1석7조통장(정기예금)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u>이 설명서</u>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u>참고자료</u>이며, <u>실제 계약은 본 상</u> 품의 약관, 거치식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u>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u>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상 품 명: 1석7조통장(정기예금)

• 상품특징 : 비대면채널 전용 거치식 상품으로 이자율우대 혜택 제공

2 거래 조건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4.6.27일 현재, 세전 기준)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상품유형	• 실세금리정기예금
거래방법	• 신규 : 비대면채널(i-ONE뱅크 등) • 해지 : 영업점, 비대면채널(i-ONE뱅크 등)
가입금액	• 100만원 이상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하 (월 단위)
이자지급시기	• 만기일시지급식 : 만기(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입금·출금·이체 등 잔액 변동불가 등
기본이자율	• 이 상품의 기본이자율은 시장이자율에 연동하여 매일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

7 H	111.0		
구 분 만기이자 산출근거	내 용 •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자율로 계산 한 금액 [이자계산 산식] 계좌잔액 × 약정이자율 × 예치일수 / 365 - 입금 - 계좌잔액 x 약정이자율 x 예치일수/365		
만기후이자율	• · 만기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한 정기예금의 만기후이자율을 적용		
중도해지이자율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세금리정기예금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 대시기간 이자율 답입기간 경과비율 10%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5% 답입기간 경과비율 10%이상 20%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10% 답입기간 경과비율 20%이상 40%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20% 답입기간 경과비율 40%이상 60%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40% 답입기간 경과비율 60%이상 80%미만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60% 답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60% 답입기간 경과비율 80%이상 가입일 현재 계약기간별 기본이자율 × 80% >** 모든 구간 최저이자율 연 0.1% 적용		
중도해지이자 산출근거	•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중도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별 중도해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원미만 절사) ***********************************		
예금 해지 시 불이익	• 만기 전 예금해지 시 중도해지이자 적용 등		
통장발급	불가능		

구 분		내 용	
예금자보호여부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세제혜택	가능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재예치	불가능		
분할출금	가능	중도해지이자율 적용	
양도 및 담보제공	양도 및 담보제공 가능		
계약해지방법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만기자동해지 서비스 신청 가능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중도해지가 아닌 만기해지로 적용되며, 이자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약정이자율을 적용한 만기해지 가능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불가)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국번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후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조회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수 있으며 세법 · 관계법령, 약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 •만기 전 해지할 경우 계약한 이자율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시 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 1석7조통장(정기예금) 연계·제휴서비스

내 용
• IBK사이버문화센터 무료수강 서비스 • 주요 내용 - 이 통장 가입고객은 IBK사이버문화센터(http://happy.ibk.co.kr)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주요수강 내용은 외국어, 컴퓨터 활용, 생활교양 등 입니다.
• IBK기업은행은 연계·제휴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며,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
• 무료수강기간은 이 통장 가입일로부터 1년간으로 합니다. 다만, 은행은 무료수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우편, 팩스,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축소·변경 6개월 전부터 매월 고지 (단,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금융회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이 상품을 가입하여 활동좌를 보유한 경우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안내

용어	설명
압류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시간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시간